

세녹스 무죄판결, 석유업계의 이유있는 항변

글·김신 | 석유가스신문 취재팀장

세녹스로 대표되는 알콜첨가제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않으며 오히려

정상적인 석유제품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단독2부(박동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월20일 선고공판을 통해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된 세녹스 생산사 대표와 관련 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세녹스를 비롯한 알콜첨가제 생산사들은 법원의 1심판결을 면죄부 삼아 즉각적인 제품 생산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석유협회가 반발하고 나섰고 주유소업계 역시 동맹휴업 가능성을 내비치며 실력행사에 나설 태세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즉각 항소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법정 다툼의 2라운드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다면 서울지방법원은 어떤 이유로 세녹스를 유사석유가 아니라고 판결내렸는지 또 그 과정에서 석유업계가 이의를 제기하는 대목은 어떤 것들인지를 알아 보는 것은 향후 전개될 상급 재판결과의 향방을 점쳐보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별도의 상품명 가져 휘발유 오인 가능성 적다’ (?)

재판부는 세녹스가 별도의 상품명을 가지고 대리점이나 주유소에서 판매된만큼 일반소비자들이 일반휘발유로 오인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판단처럼 설령 알콜첨가제 생산사들이 휘발유의 성능을 보조하는 첨가제로 그 용도를 제한했더라도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연료로 오인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면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

대다수의 알콜첨가제들이 독자적인 상품명을 가지고는 있지만 유통과정에서 ‘알콜휘발유’나 ‘휘발유 대용 첨가제’ 등의 부수적인 명칭을 내걸고 있어 소비자들이 휘발유 대용으로 오인할 수 있는 요소가 크다.

특히 휘발유와 첨가제의 혼합비율이 정확하게 6:4로 지켜져야 하지만 실제 판매현장에서는 첨가제가 연료 그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면 알콜첨가제는 이미 휘발유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재판과정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관심이 쏠려 있고

판결에 따른 파장이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휘발유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들 스스로가 알콜휘발유를 연료 대용으로 인식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는 점까지도 재판부는 판결과정에서 참고하는 치밀함을 보였어야 했다.

지금도 가짜휘발유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시너’의 경우 희석제가 주요 사용용도라는 점을 판매자나 사용자들 모두 인식하고는 있지만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무시하고 연료 대용으로 유통되고 사용되고 있다.

결국 자의든 타의든 소비자들이 알콜첨가제를 휘발유로 오인하거나 또는 유혹을 느낄만한 동기가 제공됐다면 설령 생산사가 직접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이를 방조했거나 또는 그럴만한 개연성이 없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가 판결과정에 작용됐어야지 상품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휘발유와의 오인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정상 유통경로 거쳐 타 유사석유와 다르다’ (?)

‘대리점이나 주유소 등의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세녹스가 판매된 만큼 음성적으로 판매되는 타 유사휘발유와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재판부의 설명 역시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대목중 하나다.

세녹스를 비롯한 수많은 알콜첨가제들이 아무런 안전시설도 갖추지 않은 일반 상점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심지어 별도의 사업자등록요건도 갖추지 않은 이동차량들이 동원돼 길거리에서 호떡 팔 듯 노상판매에 나섰던 것은 이미 각종 언론의 보도나 경찰청의 수사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개된 바 있다.

‘위험물저장취급소’라는 이름으로 주유소와 유사한 영업장에서 세녹스가 판매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상당수의 판매방식이 일반상가나 이동차량에 집중됐던 것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밟아 판매됐기 때문에 유사석유가 아니라는 판단은 현실적인 상황인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석유사업법이 행정부 자의적으로 해석되서는 안된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의 자동차 연료에 벼금 가거나 이보다 우수한 연료의 연구와 개발, 판매 등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근거로 석유사업법령이 활용되서는 안된다’며 관련 법령의 확대해석을 경고했다.

이를 막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라고도 언급했다.

정유사나 석유유통업계의 기득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석유사업법령이 남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하지만 세녹스를 비롯한 알콜첨가제가 과연 기존 자동차 연료를 대체하거나 그 기능을 보완하겠다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관련 행정 당국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 노력했는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 외국들의 경우 새로운 연료가 개발될 경우 이에 대한 상용화나 대중화에 대한 적합 여부를 따지는데 최소 4~5년간의 검증작업을 벌인다.

환경친화성이나 석유대체성에서 이미 전 세계적으

초 점

로 검증받은 바이오디젤의 경우에도 국내 생산과 유통을 위해 추가로 행정당국으로부터 2년여에 걸친 각종 필드테스를 받았고 현재도 일부 지역에 한정돼 시범보급사업이 진행중일 만큼 정부와 생산사 모두가 신중하다.

자동차 연료는 사용자의 안전과 환경, 자동차의 성능, 세금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료가 콩기름에서 추출돼 석유대체성을 인정받은 바이오디젤과는 달리 세녹스는 석유와 뿌리가 같은 원유에서 추출된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대체에너지의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환경친화성 역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결국 태생적으로 대체연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계가 뚜렷했던 세녹스가 첨가제 형태로 시장에 진입했던 것은 생산사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휘발유와의 혼합비율이 6:4에 이르는 등 첨가제 고유의 기능을 넘어선데다 실제 유통단계에서는 그 자체가 연료로 전용되는 상황에서 산자부가 석유 사업법을 들어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역시 당연한 행정 수행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재판부 역시 판결문에서 세녹스가 첨가제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로 ‘휘발유와 40%를 혼합하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연료에 소량 첨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첨가제 정의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렇다면 첨가제도 아니면서 정상적인 검증절차도 밟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연하게 연료대용으로 사용되

는 알콜첨가제에 대해 행정당국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었겠는가?

‘세녹스는 정상적인 석유제품이다’ (?)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대목은 세녹스의 정체성에 있다.

재판부는 세녹스가 유사석유도 첨가제도 아닌 ‘정상적인 석유제품’이라고 명시했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석유제품은 “휘발유와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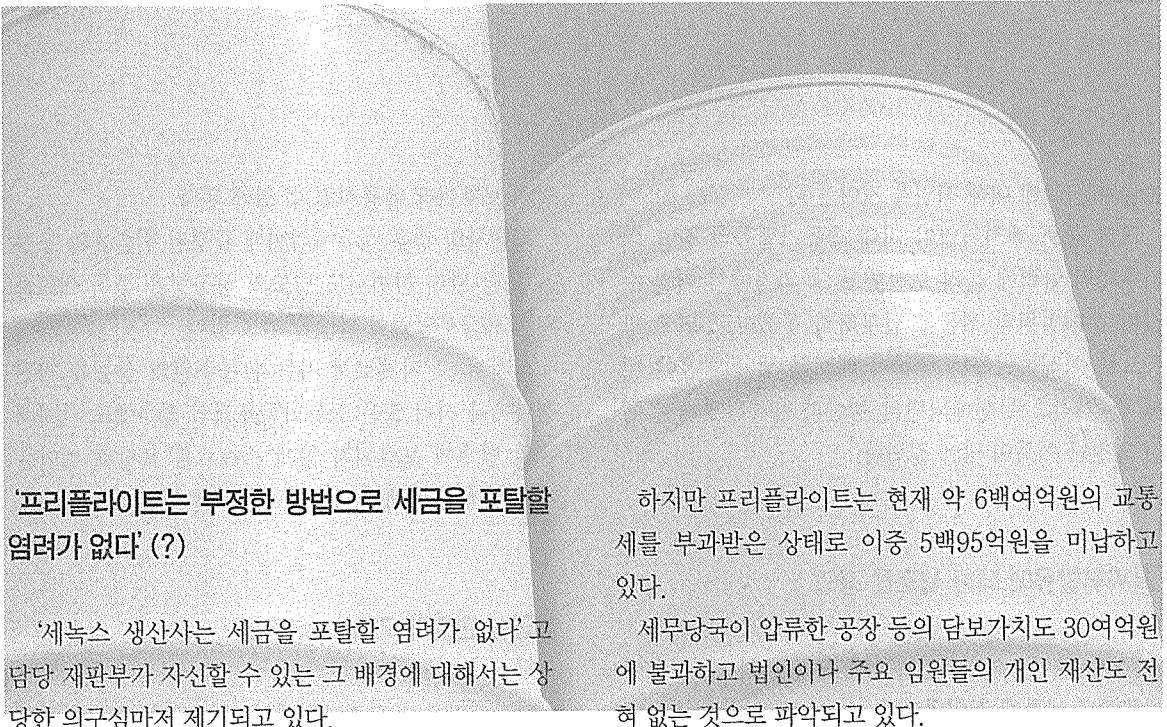
또 시행령에는 탄화수소유는 항공유, 용제, 아스팔트, 윤활기유, 석유중간제품 및 부생연료유 등으로 명시했고 석유가스는 ‘프로판과 부탄,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의 판단처럼 세녹스가 정상적인 석유제품이라면 법령에 명시된 다양한 제품들중 어느쪽에 해당되는지가 분명해져야 한다.

그래야만 세녹스에 해당되는 법적인 품질기준이 정해질 수 있고 부과대상 세금의 종류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재판부는 휘발유 산소함량을 맞추기 위해 의무화된 MTBE마저 석유제품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재판부가 석유사업법에도 없는 석유제품을 만들만큼 석유제품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리플라이트는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할 염려가 없다' (?)

'세녹스 생산사는 세금을 포탈할 염려가 없다'고 담당 재판부가 자신할 수 있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프리플라이트 대표이사와 영업본부장)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가 교통세법을 개정해 유사석유제품에 대해서도 휘발유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녹스가 유사석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세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녹스의 무죄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기로 결정한 만큼 세녹스가 유사석유로 최종 결론내려져 교통세 부과대상으로 확정지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세녹스는 정상적인 석유제품으로 적용되는 세율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1심 재판부 스스로가 밝힌 것을 감안하면 프리플라이트는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 언제라도 관련 세금을 납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프리플라이트는 현재 약 6백여억원의 교통세를 부과받은 상태로 이중 5백95억원을 미납하고 있다.

세무당국이 압류한 공장 등의 담보가치도 30여억원에 불과하고 법인이나 주요 임원들의 개인 재산도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세녹스의 거래과정은 철저한 비노출 현금거래로 법인 통장 등의 잔고조차 파악되지 않거나 전무한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도 프리플라이트가 어떻게 부정한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할 가능성이 없다고 재판부가 확신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지 않다.

똑같이 세금을 탈루하더라도 어떤 방법이 부정한 것이고 또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프리플라이트에 대해 재판부가 부정한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 배경은 추측컨대 회사의 거래실적을 조작해 관련 세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또는 처음부터 세금을 탈루할 의도로 법인이나 대표자의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질 수 있다.

재판부의 판단처럼 불순한 의도를 깔지는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다 해도 결과가 세금탈루로 나타난다면

초 점

누군가는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저 중소 벤처기업이 거대 공룡기업들의 집단 이기주의의 압력에 눌려 도산했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수백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다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기에는 세금이 배제된 채 휘발유에 비해 싼 가격으로 판매되면서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쟁진 엄청난 이득이 맘에 걸린다.

'가짜휘발유에 대한 새로운 정의'

1심재판부는 석유사업법상에 규정된 가짜휘발유에 대해서도 새롭게 정의내렸다.

석유사업법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정의한 26조의 규정에 대해 위헌시비가 제기됐던 2001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이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의 보호와 탈세의 방지, 국민의 인체와 환경의 보호 등을 위해 정품이 아닌 다른바 가짜휘발유를 생산,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하고 헌법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합헌'이라고 결정내렸다.

하지만 담당재판부는 가짜 휘발유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한다며 ▲정상적인 연구과정 및 국공립 검사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정밀한 검사 등을 거쳐 개발되고 인정된 제품으로 휘발유로 사칭되어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 독자의 제품으로 정상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며 ▲석유제품의 품질을 저하하거나 세금 포탈, 국민의 건강 및 환경 저해 등의 염려가 없는 정상적인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는 정상적인 석유제품은 누구라도 제조할 수 있고

법의 보호아래 유통시킬 수 있게 된다.

정유사의 경우 석유사업법에 규정된 휘발유와 조성을 조금 달리 하면서도 별도의 상품명을 붙여 세녹스처럼 세금부담없이 판매할 수도 있다.

심지어 그 자체로서 자동차 동력원의 성능을 가진 첨가제나 시너 같은 석유화학용제의 경우에도 가짜석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게 스스로를 포장해 열마든지 합법적인 판매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상급심 판결에 기대

담당재판부가 판결과정에서 세녹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데는 판결문에 적시되지 못한 다양한 법률적인 이유나 배경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

재판부의 숨은 의도를 무시한 채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만을 토대로 그 모순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또 법원의 판단은 그 옳고 그름을 떠나 분명히 존중 받아야 한다.

상급심이 존재하는 이유도 판사 역시 재판과정에서 오류를 일으킬 수 있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다만 1심판결에 대해 알콜첨가제 업계와 반대 노선에 서있는 석유업계의 불만이 적지 않다는 점과 그 정확한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는 것은 상급심의 판결에 중요한 논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어차피 알콜첨가제 공방의 열쇠는 법리싸움에 있는 만큼 감정적인 대응보다도 보다 주도면밀하고 합리적인 명분과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때다. ♣